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01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4228	김성원의원	2025.11.13.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6.3.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 쳐 소위 회부
	2215728	이재관의원	2025.12.3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지식재산소위('26.3.10.) 상정, 축조 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2026. 3. 1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  
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3. 12.)에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  
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  
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특히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가스배관시설 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 등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변경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LNG 민간 직수입사가 2024년도 기준 25개사로 늘어나면서 민간이 전체 가스 수입량의 26%까지 맡게 되며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자의성과 외부 검증 부족,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과 책임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가스 배관시설의 설치·이용·공사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관과 업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처럼 민간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협업하면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배관시설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중앙관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도 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둠(안 제39조의9  
신설).

나.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봄(안  
제45조의2).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3에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둔다.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가스배관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가스배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가스공학이나 그 밖의 에너지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가스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가스산업·에너지정책·요금 및 비용 산정·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 ②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스배관시설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2.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12에 따른 재정을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가스배관시설 보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12(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 ①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가스배관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3(의결정족수) 가스배관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의2 중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

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
2.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u>  <u>치    및    구성) ① 제39조의6에</u>  <u>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u>  <u>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u>  <u>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u>  <u>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u>  <u>회를 둔다.</u></p> <p><u>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u>  <u>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u>  <u>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u>  <u>임으로 한다.</u></p> <p><u>③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과</u>  <u>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u>  <u>또는 위촉한다.</u></p> <p><u>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u>  <u>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u>  <u>다.</u></p> <p><u>⑤ 가스배관위원회는 그 업무</u>  <u>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u>  <u>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u>  <u>수 있다.</u></p> <p><u>⑥ 그 밖에 가스배관위원회 및</u></p>

<신 설>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가스공학이나 그 밖의 에너지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가스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가스산업·에너지정책·요금  
및 비용 산정·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  
는 사람

② 위원이 꺾위(闕位)된 경우  
보꺾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만, 위원장이 꺾위되어 후임자  
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  
는 새로 시작된다.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  
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  
무를 집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  
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

<신 설>

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스배관시설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2.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 이용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12에 따른 재정을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가스배관시설 보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신 설>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12(가스배관위원회의 재

정) ①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 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가스배관시설 공동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가스배관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

제39조의13(의결정족수) 가스배관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

1.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
2.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53조(벌칙) -----  
-----  
-----  
-----

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 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 ----- -----.
-----------------------------------------------------------------	-----------------------------------